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
(안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후 예정

3) 규제심사 추후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7866호(2017. 2. 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2020’를 ‘2024’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u>2020</u>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u>2024</u>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3 - 6255